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.

- 2005년 3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,
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,
3월 18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,
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」에
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 -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
있는 일·숙직수당 책정방법이 중앙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별로
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,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
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,

-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 -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,000원으로 하고,
 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수당을 당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금번 제출된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」 은,

-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 1회당 10,000원씩 지급해 왔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(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재정지원과-663, 2004. 5. 11),
- 지방자치단체내 일반행정기관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

-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 및 확보 대책,
- 또, 조례 제정이 지연된 사유,
- 그리고 조례를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」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